

2023년 「D-유니콘 프로젝트」 유망기업 모집안내

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선택과 집중의 맞춤형 스케일업 확대 지원으로 유니콘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3년 대전형 유니콘 유망기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3년 2월 27일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대전 내 성장 가능성 높은 유망 기업을 선별,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스케일업 및 글로벌 시장 진출 촉진으로 유니콘 기업의 탄생 유도

□ 지원규모 : 10개사 이내 (최종 선정기업 기준)

□ 지원대상 : 공고마감일 기준, 대전지역 내 본사 소재 업력 3년 이상 중소·벤처기업 중 5년 이내 투자유치 실적이 누적 5억원 이상인 비상장기업 ※ 코넥스 상장기업 신청 가능

□ 지원방식 : **공통지원**(10개사 이내) 및 **선별지원*** (5개사 이내)

* 최종 선정된 기업 중 글로벌 사업화 역량을 갖춘 5개사 이내 지원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구 분	지원사업	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원규모
공통 지원	성장도약 자금지원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대전테크노파크	10개사 이내
	글로벌 전시회 참가지원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전시회 부스운영 필수		
	인력양성	○기업 인력양성 및 특성화 교육	충남대학교	
	성장인프라 네트워크	○기업-투자사 연계 투자유치 지원 ○기업-유관기관 및 기업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벤처캐피탈타운 대덕이노폴리스 벤처협회	
선별* 지원	글로벌 사업화	○해외진출 사업화 전략 지원	KAIST 글로벌기술 사업화센터	5개사 이내

※ 성장도약자금지원 및 글로벌 전시회 참가(기업이 직접수행), 인력양성 및 네트워크, 글로벌사업화 지원 (지원기관의 간접지원)

□ 세부내용

- **(성장도약자금)** 기업의 자율성을 부여한 맞춤형 성장 지원으로 스케일업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10개사 이내
 - (지원금액) 총 700백만원 예산 범위 내 차등 지원 (기업당 70백만원 내외)
 - (자부담금) 성장도약자금 + 선정기업 자부담금 30% 이상(현금) 매칭 필수
예) 성장도약자금 70백만원 지원 시, 자부담금은 70백만원의 30% 이상 매칭
 - (지원항목)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지식재산권, 인증지원, 기술 이전, 기술·경영 컨설팅, 제품 및 패키지 디자인, 브랜드 개발, 시장조사, 제품 홍보물 제작 등

지원항목		지원내용
기술지원	①시제품 제작	- 시제품 제작(제품설계 및 개발, 제작)
	②제품고급화	- 제품 고도화(상용화 제품 성능 개선)
	③지식재산권	- 국내외 특허·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출원·등록비용
	④인증지원	- 국내외 제품 신뢰성 및 성능인증, 시험 분석 등
	⑤기술이전	- 국내기술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거래유형 : 기술양도, 전용실시, 통상 실시 등)
사업화 지원	①컨설팅	- 기술·경영·연구개발·마케팅·사업화 컨설팅 등
	②디자인	- 제품 및 패키지(포장) 디자인
	③브랜드개발개선	- CI, BI 리뉴얼 및 신규개발 등
	④시장조사	-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⑤홍보	- 제품 홍보물 제작(브로슈어, 영상, 홈페이지 등)

* 지원항목은 기술지원 1개 이상, 사업화지원 1개 이상 선택이 필수이며, 사업비 편성금액은 평가 시 조정 될 수 있음.

- **(글로벌 전시회)** 국제 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 (지원규모) 10개사 이내
 - (지원금액) 총 200백만원 예산 범위 내 지원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지원비목) 부스 임차 및 장치비, 운반비, 통역비, 항공료 등

비목	내용
부스 임차 및 장치비	- 전시 참가비(부스 임차비 및 장치비) 전액 ※ 전시부스 운영 필수
운반비	- 전시회를 위한 물품 운송비 지원(편도기준)
통역비	- 전시회 운영을 위한 통역비 지원
전시회 참가비	- 전시회 참가비 지원
항공료	- 출장자 1인 항공료 지원(이코노미 기준)

※ 기타 체재비, 전시품 반송비, 관세 및 비즈니스 개인장비 등은 참가기업 부담

○ **(글로벌 사업화)*선별지원** 해외 진출 사업화 전략 컨설팅

- (지원규모) 5개사 이내

- (지원내용) 글로벌 사업화 단계에 맞는 해외 진출 지원 전략 수립

구분	지원내용
Track 1 기업 특화 프로그램	· 타겟 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수립 · 현지 테스트, 시장 검증, 비즈니스 개발, 마케팅 등을 위한 현지 파트너 발굴 및 연계 · 사업 수행, 협약 체결 등 지원
Track 2 산업 분야 특화 프로그램	· 산업별 글로벌 밸류체인(GVC) 분석 · 글로벌 공급망 진입 및 틈새·공공재 등의 진입 전략 수립,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협력 기회 발굴 등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기회 제공
Track 3 혁신 성장형 해외수요 매칭	· 제품 고도화와 기업 성장을 위한 국제 공동 연구 발굴/기획/협력 지원 · UN 공공조달시장 수요 발굴, 기타 해외 각국의 공공 프로젝트 발굴 및 연계, 사업 기획 등 지원

※ 3개의 트랙에서 기업이 원하는 1개의 트랙 프로그램 지원

3 선정평가

□ **평가절차** : 단계별 평가를 통해 최종선정

평가단계		평가내용
1차	요건심사	·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 투자유치금액 및 업력 등 요건검토
2차	서류평가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사(필요시) 등 기술성·사업성 평가
3차	발표평가	· 성장가능성, 시장확장성 등 사업계획서 중심 발표 평가
최종선정 (10개사 이내)		· 고득점 순으로 유망기업 최종선정

□ **1차 요건심사**

○ **(신청요건)** 신청요건 및 제출서류 (누락여부 등) 검토

- ① 투자실적, ② 업력, ③ 채무불이행 여부, ④ 국세·지방세 체납 여부,
- ⑤ 정부, 지자체지원사업 참여제한 여부, ⑥ 휴폐업 여부

- **(투자유치실적)** 공고마감일까지 5년 이내의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납입 완료된 누적 금액 5억원 이상 증빙자료 확인
- **(투자실적 인정범위)** 모집요건 중 투자실적 인정범위(p.10 참조)

□ **2차 평가**

- **(내용)**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장 실사(필요시) 등 기술·사업성 평가
- **(평가기준안)**

구분(배점)	평가기준	구분(배점)	평가기준
내부역량 (10)	기술·사업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CEO 및 참여인력의 역량	기술성 (30)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의 기술개발 환경, 실적, 기술의 우수성 및 제품화 능력 등
시장성 (30)	핵심기술의 제품 경쟁력, 시장성장성, 차별화전략 등	사업성 (30)	유니콘 성장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계획서의 수행 가능성 등

□ **3차 평가**

- **(내용)** 발표를 통한 D-유니콘 기업으로의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시장확성성 평가
- **(평가기준안)**

구분(배점)	평가기준
D-유니콘 사업계획의 적정성(40)	① D-유니콘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사업목표의 명확성
	② 사업내용 및 실행가능성
	③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추진 방향의 적정성 여부
	④ 사업비 편성 및 활용용도의 적정성
성장가능성 (30)	⑤ 시장 점유율 확대 등을 통한 성장 가능성
	⑥ 기술·사업모델의 고도화, 사업 확장 등을 통한 기업 내부적 성장 가능성
	⑦ 국내·외 후속 투자유치 가능성
시장확장성 (30)	⑧ 시장 규모의 성장(확대)가능성
	⑨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지배적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
	⑩ 창출될 신산업·신시장이 글로벌 시장 및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력

□ 최종 선정

- **(최종선정)** 3차 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10개사 이내 최종선정
- **(동점자 순위)** 합계 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계획의 적정성, 성장 가능성, 시장확장성 순으로 항목별 점수가 높은 기업 순으로 선정

4 진행절차 및 추진일정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3. 2. 27(월) ~ 3. 17(금)
- **(신청·접수기간)** : 2023. 3 13(월) ~ 3. 17(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대전기업정보포털(www.dips.or.kr) 제출서류 1개 파일로 업로드 후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순서 : 기업 회원가입(기업인증필요) → 온라인 접수(과제접수) 해당란 입력 → 서류첨부 후 등록완료 →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이메일 제출 (*온라인 접수 후 접수증 및 사업계획서, 관련서류를 스캔하여 압축 후 엑셀파일과 함께 사업담당자 이메일로 별도 제출(신청서 원본 1부는 선정 후 별도 제출))

< 유의사항(필독) >

-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 및 기업인증 등 추가 시간이 필요한 관계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 입력완료 요망**
-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 미비 책임은 귀사에 있고, 일체 반환 없음

6 신청제외 대상

채무 불이행	① 기업의 부도 ②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자 ④ 파산·회생절차의 개시 신청(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법인기업은 예외로 함)
부실위험	⑤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5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함)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⑥ 자기자본 전액 잠식 ※ 단, ⑤, ⑥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시 인정 가능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
기타사항	⑧ 부실징후가 있거나 유니콘기업 육성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⑨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7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여부
1	신청기업 현황조사표 (※엑셀자료 이메일로 제출)	첨부양식 (엑셀)	필수
2	2023년도 「D-유니콘 프로젝트」 사업계획서	첨부양식 (원본)	
3	[양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4	[양식2] 투자유치내역확인서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여부												
5	[양식3] 주주명부														
6	[양식4] 민간부담금 참여의사 협약서														
7	[양식5] 중복지원 금지 협약서														
8	투자계약서(최근 5년 이내) * 투자유치내역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투자자 구분에 따른 추가 서류 필수 제출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 계약체결일 확인 필수 (사본가능)													
	<table border="1"> <thead> <tr> <th>투자자 구분</th> <th>제출서류</th> </tr> </thead> <tbody> <tr> <td>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td> <td>사업자등록증</td> </tr> <tr> <td>투자조합</td> <td>고유번호증</td> </tr> <tr> <td>개인(엔젤투자자)</td> <td>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td> </tr> <tr> <td>창업기획자</td> <td>창업기획자 등록증</td> </tr> <tr> <td>외국투자회사</td> <td>Certification of Registration</td> </tr> </tbody> </table>			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투자자 구분			제출서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사모집합투자기구			사업자등록증											
	투자조합			고유번호증											
	개인(엔젤투자자)			투자확인서(한국엔젤투자협회 발급)											
	창업기획자			창업기획자 등록증											
	외국투자회사			Certification of Registration											
9	사업자 등록증	사본가능 (원본대조필 달인)													
10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 포함, 전체 페이지 제출	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본)													
11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12	최근 3년분('20,21,22년*) 재무제표														
13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발표 평가 대상자는 PPT자료 별도 제출(대상자에 한해 추후 안내)

**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누락 시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

8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최종 선정기업은 대전테크노파크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성장도약 자부담금(현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협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최종 선정기업은 D-유니콘 지정기간 동안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성과조사 등)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및 이메일
기업지원단	김영숙 책임	042-930-4854 / kys0430@djtp.or.kr
	양승미 책임	042-930-4887 / ysm0222@djtp.or.kr

10 모집요건 중 투자실적 인정범위

□ 아래의 유형에 해당하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실적 인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
 -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 ③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 ④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 ⑥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⑦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자
 - ①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②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 ③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 ④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⑥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 ⑦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⑧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0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 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 ⑩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⑪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⑫ **기술보증기금**
 - 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⑭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의 방식으로 투자하는 **외국투자회사***
 - * 외국투자회사 : 1) 국내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한 실적이 있는 외국투자회사
 - 2) 국제적 신인도가 높은 투자전문회사
 - 3) 투자가 이루어진 날 또는 현재 국내외 벤처캐피탈협회 소속의 투자회사
4.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5.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투자자산운용사, 증권사**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특수관계인 투자실적 제외